

#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43조의 요약

- 기업회계기준 적용 및 관행의 계속 적용시 : 특별예외규정있는 경우외에는 기업회계처리대로 손익확정함(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판단 및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대하여).
- 본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히 규정한 경우(법·시행령·시행규칙 등)는 기업회계기준 적용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였더라도 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판단 및 취득원가 결정하여 세무조정함(특별규정의 사례 : 각 종 손익귀속시기 중 예외거래, 예금 등 이자수입, 금융기관수입, 임대료,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부채평가, 이연자산).

### ●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 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1. 기업회계기준과 관행 적용의 의의

#### ①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업회계처리 존중

법인의 각 사업연도마다의 소득계산에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본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그대로 따른다.

기업의 손익세무조정이 총익금과 총손금을 모두 판단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함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기업회계상 계산된 당기순손익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특별히 가감되는 사항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기업회계상 계산된 당기순손익이 그대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실무현황에 대해 본 조의 규정 의의가 있다.

#### ② 기업회계기준·관행의 존중 대상

- ◎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손익귀속시기 등
- ◎ 자산취득원가 및 정상시가계산, 반영 부채평가 등

#### ③ 객관적 사실에 의한 손익계산규정 등

- ◎ 본 법 제40조(손익귀속연도) :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함.
- ◎ 본 법 제41조(자산취득가액) :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다는 취득원가주의를 택함.
- ◎ 본 법 제42조(자산·부채평가) : 법인의 손익귀속과 자산·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임의중액한 경우도 법인세 소득계산 목적상으로는 평가전의 가액(즉, 취득원가·장부원가 등)으로 함. 즉, 법인에 실제 발생된 확정된 사실에 근거해서만 과세소득을 계산하겠다는 취지임.

## ④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존용 및 세무회계와의 통일화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는 권리의무 확정(제40조) 및 매입가액·제작원가 등의 취득가액(제41조)과 부합되는 개념이 된다. 따라서 본 조는 “법인의 손익귀속 및 자산·부채취득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합리적 기업회계기준을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이나 객관성 기준에 부합된다는 뜻이 된다.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설사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매사업연도마다의 계속적 적용을 통해 손익이나 평가로 인한 과세소득이 여러 연도에 걸쳐 평균화되어 전체 기간으로 볼 때 납세금액에 큰 영향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행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고유의 경리나 회계처리방법을 존중하여 세무조정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통일화 주장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 ⑤ 기업회계기준 등 위배시 권리·의무확정주의로 복귀

기업회계기준 준용에 의한 세무처리인정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잘 적용한 경우에 한해 객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타당한 회계기준·관행을 적용하지 않거나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본 법 제40조·제41조 등의 익금·손금의 객관적 권리의무 확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유형별 손익귀속시기를 준용한다.

## ⑥ 기업회계기준 준수여부판단과 계산착오의 준용범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특별예외가 없는 경우만 회계처리대로 손익확정하는데, 계속성을 위배하거나 준용하지 못하면 세법상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로 복귀한다. 이러한 위배여부 판정시 거래건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가 위배되었다고 전체가 권리의무확정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며, 위배된 부분만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한다. 또한 계산착오시 기업회계

에 따라 판정한다.

## 2.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① 기업회계기준·관행 대부분 적용, 예외의 경우만 적용배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통일화 원칙에 따라 모든 내국법인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맞추어 세무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이 적용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는 다음 시행령에서 기업회계기준,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기타 제정된 회계처리기준 등을 열거하고 있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국제회계기준 (2010. 12. 30 개정)
-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 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010. 12. 30 신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2009. 2. 4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②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사례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손금계상에 대한 특례,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시행령 제98조), 장기할부조건 자산판매 등, 채고자산·이연자산·외화자산부채평가의 경우, 금융기관 등의 경우 및 전기요류손익수정사항 등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보다는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대로 손익인식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이러한 항목은 법인의 과세소득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법인간의 과세형평과 예측가능성 및 객관성을 위해 특별히 세법상 규정된 대로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주로 본 법 제

40조의 관련 시행령 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 등에 규정되었는바, 앞의 제40조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 II. 기업회계기준·관행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예시

### ① 법정준비금·충당금이 아닌 충당금·준비금의 손금계상 여부

본 법률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이나 충당금은 세무상의 조정만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 있다. 이밖에 기업의 재무제표에 법률에 따른 준비금이나 충당금을 회계처리상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은 기업회계에 위배되더라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 등에 대한 충당금이나 준비금 아닌 임의준비금이나 임의충당금의 경우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나 기존의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당기 손익 인식하거나 평가하더라도 법인의 회계처리대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즉, 법인세법상 규정된 대로만 적용하며 특별규정 등이 없으면 법인의 회계처리에 의한 손익반영은 부인된다.

### ② 세법상 별도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밖에 본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이나 회계관행과 다르게 별도로 규정한 것이 있다면, 이는 세법 규정대로 세무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본 조에서 “본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히 달리 규정된 거래는 세법대로 손금·익금반영해야 한다.

### ③ 재고자산·유가증권·이연자산·외화자산·부채 등

기간손익계산에 큰 영향을 주는 몇가지 계정과목과 거래에 대해서는 본 법 제42조에 의거 시행령에 특별히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방법에 의한 세무처리만 인정되므로 기업회계상 달리 적용했다면 아무리 계속성을 적용해도

세무조정대상이 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시행령 제74조 : 재고자산은 원가법·저가법 중 하나로 평가(시가법으로 하면 평가차손익은 부인됨)
- ◎ 시행령 제75조 :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의 원가법으로만 평가(시가평가시 평가손익 부인됨)
- ◎ 시행령 제76조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기업회계는 적절한 환율인바, 매매기준율 아니면 평가손익 차액 부인됨)

#### ④ 장기도급계약의 공사진행도 기준적용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손익발생이 장기이므로 이의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큰 영향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은 용역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고 원칙 규정하였고,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4조도 공사기간이 장기인 도급공사는 모두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단일화되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작업진행기준으로만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 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진행기준에 따라서만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며, 기업회계와 같기 때문에 계산상 차이가 없다면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는다.

#### ⑤ 금융회사의 손익귀속방법

금융회사는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일반 원칙의 적용위에 금융수익에 대해 금융업의 특성상 현금기준을 적용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를 일반회계기준이나 관행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법정평가방법에 의한다. 여기서 금융회사는 대손충당금설정률을 2%로 할 수 있는 일반금융회사(시행령 제61조제2항) 모두를 말한다.